

제주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1가합102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윤가원, 손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반희성

피고1. 사회복지법인 B

2. C

3. D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E

4. F

5.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재영

변론 종결2024. 8. 29.

판결 선고2024. 10.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D, F,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원고에게 343,703,785원 및 그 중 1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0.부터, 나머지 158,703,785원에 대하여는 2020. 1. 23.부터 각 202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F,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F,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원고에게 393,703,78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1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31.부터, 208,703,785원에 대하여는 2020.

1. 23.부터 각 2022. 6. 9.까지 연 5%의, 2022.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으로,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67,131,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피고 F, 피고 E은 원고에게 각 111,420,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예비적으로,

가. 소외 망 G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9. 6. 24.자 채권양도계약을 501,393,373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67,131,1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D, 피고 F, 피고 E은 원고에게 각 111,420,7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요양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망 G의 배우자이다. 피고 D, F, E은 망 G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는 2018. 12. 1. 피고 B과 시설 및 비품 포괄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B 산하 H병원이 사용하던 제주시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 2층, 3층의 각 시설 및 비품과 병원 영업을 양도양수대금 6억 원(계약금 2억 3,5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 1차 양수도(2층) 기준일은 양수인이 의료기관 개설일로 한다.
- 2차 양수도 기준일은 2019년 7월 1.일로 한다(단, 양도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모든 시설물 및 인력부분을 양도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주소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

1. 양수인은 계약금으로 2018년 12월 30.일까지 금 이억삼천오백만원(₩235,000,000)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2. 위 계약금은 양수도 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제5조(양수도 대금의 지급방법)

1. 양수인은 제3조 제3항의 양수도 대금(계약금 공제)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양수도 대금을 균등분할 지급한다.
2. 단, 양도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현재 주소지에서 사업장 주소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소지이전이 늦어질시에는 잔금은 최종적으로 주소지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목적물의 인도)

- 양도인은 2층 부분은 양수인이 의료기관개설허가시에 영업양수도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의료기관 주소지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에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12. 4. 5,000만 원을, 2018. 12. 31. 1억 3,500만 원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9. 2.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공간에 있는 인공신장실과 방사선실 등을 우선 인도받고, 2019. 2. 14.부터 위 건물 2층에서 J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H병원의 입원환자 중 투석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원고가 운영하는 J요양병원으로 보내어 투석 진료를 받게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7. 피고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2020. 1. 22.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0. 1. 8. 피고 B에 도달하였다.

사. 피고 B은 2019. 6. 1.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의 배우자인 망 G에게 피고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채권 90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0, 12, 13, 2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 B의 인도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억 3,500만원 및 각 지급일부터 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위탁진료 형태로 피고 B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피고 B이 원고의 위탁진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58,703,785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바, 피고 B은 위탁진료계약에 기하여 혹은 부당이득으로 위탁진료비 158,703,7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3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은 원고이므로 위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 B 역시 더 이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가 피고 B에 도달할 무렵 해제 내지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J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의료장비 및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 손해, 직원 및 환자들을 데리고 감으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하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B의 원상회복의무와 원고의 위와 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또한 피고 B이 원고에게 계약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의 장비 및 집기들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환자들도 데려간 이상 피고 B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위탁진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위탁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용이익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위 사용이익 상당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탁진료비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계약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12. 30.까지 계약금 2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고, 2018. 12. 4. 5,000만 원을, 2018. 12. 31. 1억 3,500만 원을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외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 C을 대신하여 장비 등 물품 구입비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 B이나 피고 C을 위하여 사용한 위 돈을 계약금의 일부인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나머지 5,000만 원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7, 8조에 따라 피고 B의 양수도 목적물 인도의무는 계약금 지급 이후인 2019년 6월 30.일까지 이행되어야 하는바, 원고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루어진 원고의 해제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합의해제 여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주장 속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계약금의 반환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택함이 타당하다.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2020. 1. 7.자 내용증명을 통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 통보에 대하여 피고 B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 B이 위 내용증명을 받은 2020. 1. 8.경 종국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2020. 1. 8.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상회복 범위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과 관련한 이자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은 실제로 지급된 계약금 18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 6.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B의 동시이행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인도하였던 물품 내지 원고가 반환하지 아니한 내역, 각 사용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손해, 사용료나 감가상각 등 구체적인 손해 금액을 특정 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보인다.

오히려 갑 제18, 24, 25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경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층 인공신장실과 방사선실 등을 우선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K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임료를 건물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왔고, 투석 진료용 인공신장기에 관한 리스료도 의료기기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L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불하고 사용해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 B로부터 인도받은 물품 상당부분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건물 임료 및 주요 의료장비 리스료를 직접 지급하고 사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미 반환한 부분을 넘어서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사용이익 상당의 원상회복의무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미반환 물품 중 '서버(모니터포함)'에 대하여는 피고 B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버의 현재 가액이나 사용기간 및 사용이익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이 주장하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금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 혹은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동시이행 및 상계 항변, 책임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위탁진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탁진료에 따른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 2022. 8.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한 점이 인정된다.

① 피고 B(요양기관 지정번호 M)의 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던 J요양병원(현 N요양병원, 요양기관 지정번호 O)이 피고 B의 환자들에 대하여 혈액투석 진료를 한 경우, '수탁검사[T][O]'로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 B의 환자들에 대하여 위탁진료 형태로 투석 진료를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위탁진료 형태로 투석진료를 한 피고 B의 환자는 113명에 달하고, 각 1회 내지 14회 가량의 투석진료를 하였으며, 피고 B이 원고의 투석진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58,703,785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급여비용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원고가 의료기기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L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인공신장기를

사용해온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의 환자들에 대한 투석 진료는 원고의 장비와 노동력에 의한 것이다.

③ 피고 B은 원고의 투석 진료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총 158,703,785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는 급여비용의 배분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무상으로 위탁진료를 해주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장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급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 B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미 반환한 부분을 넘어서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사용이익 상당의 원상회복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급여비용 상당액인 158,703,7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탁진료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날 이후인 2020. 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43,703,785원(= 계약금 185,000,000원 + 위탁진료비 158,703,785원) 및 그 중 1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0.부터, 나머지 158,703,785원에 대하여는 2020.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F,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망 G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채권 90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 B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또한 채권양도를 위한 피고 B의 2019. 6. 1.자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이에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F, E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피고 B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한 501,393,373원(=계약금 반환 채권 303,317,650원1) + 위탁진료비 채권 198,075,723원2))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고 B의 피고 C, D, F,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

2) 피고 B과 망 G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수입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망 G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501,393,373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C, D, F, E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나아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채권자대위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피고 B의 재산대장, 감정평가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의 2019년경 자산총계액은 4,809,927,143원, 부채총계액은 118,439,506원으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지 않은 점, ②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P, Q 토지, R, S 토지, T 토지 및 각 토지 지상 건물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U 요양원 내 기계, 기구류, H요양병원의 고정자산 등 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2020. 8. 31.을 기준으로 피고 B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총 가액을 4,895,201,380원으로 평가되었고, 현재 피고 B이 보유한 토지, 건물, 기구 및 비품 등 가액은 5,049,940,763원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을 당시인 2019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이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처분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무자력을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국고보조를 받아 취득한 재산은 중앙관서 장으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할 것이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피고 B이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주무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B의 기본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주무관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기본재산을 피고 B의 적극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피고 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 B의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B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 원상회복으로 인한 채권과 피고 B의 별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비용 등 채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비용 등 채권은 피고 B과 환자들 사이의 개별적인 의료계약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려는 피고 B의 별지 급여비용 등 채권이 원고의 위탁진료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C, D, F,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청구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예비적 청구(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척기간이라 할 것인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피고 B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트릴 수 있는 사해행위라는 점과 피고 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의 무자력 인정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을 당시인 2019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이 망 G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 F,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D, F,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 F,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노현미

판사 박진희

판사 고은솔

별지

1) 계약금 원금 235,000,000원 + 2023. 7. 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68,317,650원 = 303,317,650원

2) 위탁진료비 원금 158,703,785원 + 2023. 7. 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9,371,938원 = 198,075,723원